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84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1. 20.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인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한다)는 2019. 9. 26.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학교 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항, 제

9항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전학(제8호),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각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9. 27.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피청구인의 『전학(제8호)』 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6. ‘기각’ 결정되자, 2019. 11. 20. 『전학(제8호)』 처분에 불복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 학부모에게 사건의 내용이 전달된 시점이 2019. 9. 20.(금)이고, 2019. 9. 26.(목)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원인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만 확인한 후 청구인과 피해학생 양쪽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까지 확대 질문(예를들어, 가슴을 몇 초 만졌는지)을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또한 담임교사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반성

정도, 심리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답을 ‘예’, ‘아니오’ 로만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여 청구인이 해명할 기회를 차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동은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일회성 단순 행위였으며, 청구인이 먼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발설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A학생과는 평소 장난치는 사이여서 한 행동이었으나, 며칠 후에 A학생에게 사과하고 마무리가 된 사안이며, B학생과 사귄 때 신체를 만져도 되는지 미리 물었고, 이에 대해 B학생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서 2차 접촉을 시도했으며, B학생이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전달받은 후에는 교제가 끝날때까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현재는 청구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반성정도와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학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4일 이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했고, 성 관련 사안의 중대성 및 시험,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일자를 결정하였고,[2019 9. 20.(금) 사건 접수 및 117 신고, 9. 24.(화)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 9. 26.(목) 자치위원회 개최] 또한, 담임교사는 청구인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개최 및 참석 여부를 전했다.

고, 9. 24.(화) 등기 우편으로 자치위원회 참석 통지서 및 서면진술서를 전달하였으며, 9. 20.(금), 9. 23.(월), 9. 24.(화), 9. 25.(수), 9. 26.(목)에 걸쳐서 청구인 학부모(어머님)와 통화, 문자를 통해 지속해서 사건을 안내하고 상담하였기에 학폭위 개최과정 및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나. 담임교사의 일방적인 사안 조사와 청구인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이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과 상담을 하고 사안 조사서를 받았으나, 담임교사의 사안 조사서 및 내용은 자치위원회 관련 자료나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조사한 관련 학생들의 사안 조사서를 증거자료로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다.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청구인이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는 청구인과 만남을 원치 않았기에 성폭력 신고 및 대책 의무 중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 보호조치로 청구인과 분리조치 하였다.

라. 이 사건의 진실과 청구인의 반성 정도 및 심리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99호)¹⁾에 의거하여 진술 내용과 관련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치위원회를 통해 기본 판단 요소 점수 및 부가적 판단 요소를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1) -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4점), 지속성(4점), 고의성(4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3점), 화해정도(4점), 총 19점)
- 부가적 판단요소(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해당 없음)

마. 일회성 단순 행위임에도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가해학생의 처벌과 심리적 상황 보다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조치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안은 일회성 우발적 사안이 아닌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하여 수차례 및 다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안이고 특히 청소년기 성 관련 사안은 피해 여학생들의 심신의 안전과 재발 방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다.

바.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확보한 관련 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자료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 및 피해 학생, 학생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전학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보충서면과 제출된 증거 포함)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B 및 A 학생은 2019. 9. 20. 이 사건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행위로 신고를 하여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건접수 및 117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24.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를 하였으며, 같은 달 26, 학폭위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9. 9. 24. 등기우편을 통해 학폭위 참석통지서 및 서면진술서를 전달하였고, 학폭위 개최 당시 피해학생들 및 그 부모, 청구인 및 그 부모가 학폭위에 참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심의하여 청구인에 대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전학(제8호),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각 조치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학폭위의 결의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폭위를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모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였으며, 학폭위 위원들은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하여 이 사건 처분 조치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학폭위 개최 및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또한 ① 피해학생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며, 단순히 일회성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해학생들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도 청구인의 사과나 용서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측과의 만남조차 원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점, ③ 피해학생이 피해 당시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용인되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행위를 누가 어느 학생에게 전파하여 피해학생들의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 ⑤ 성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심신의 안전과 재발방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하다거나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